

긴급입찰 사유서

1. 사업개요

- 가. 사업명: 신고된 신규화학물질의 스크리닝 평가 방안 마련(Ⅱ) - AI 기반 유전독성 예측 고도화
- 나. 사업금액: 297백만원
- 다. 사업기간: 계약일로부터 270일
- 라. 조달방식: 중앙조달
- 마. 계약방식: 제한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방법)

2.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

가. 법적근거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제4항제1의2호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」 제1조 및 제2조

나. 긴급입찰 사유

- 「화학물질등록평가법」(이하 “화평법”) 개정으로 신고제도 시행(25.1) 및 정보공개제도 시행(25.8) 됨에 따라, 유해성정보 확인 시 예측평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배경자료 확보 시급
 - 화평법 개정에 따라 유해성자료 제출없이 유통되는 신규화학물질이 증가되어 유해성이 높은 물질 선별을 위한 스크리닝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
 - 입찰에 따른 공고기간 장기화(20일 이상)시 과업의 착수기간 지연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급입찰 필요
 - 본 연구과제를 통해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주요 미확인 영역 중 유전독성 정보 공백을 해소하고 유해성이 높은 물질 조기선별의 기초자료를 조속히 확보하고자 함
 - 아울러,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·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조기집행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
- ※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제5항에 따라 공고기간을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 가능

화학물질안전원

